

해양수산부 소관품목(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물량 제1차 배정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2024.5.9)에 따라 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적용물량 배정 및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HS번호	금차 배정물량 (kg)	용 도	신청자격	적용관세율 (%)	금차 수입이행기한	금차 시장공급기한
마른김	1212-21-1010	300,000	일반내수용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0	2024.6.28.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2024.7.28.
조미김	2008-99-5010	75,000	일반내수용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0		

※ 금차 신청기한 이후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른 한계물량 잔량에 대한 추가 배정 예정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미신고한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용어의 정의

- (물량) 배정 : 할당관세적용희망 업체의 추천 신청을 받은 후, 조건을 충족한 신청업체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고, 협회 세부요령 및 공고를 통해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물량(수량)에 대한 수입권을 안배하는 것
- 배정물량 : 할당관세적용희망 신청업체가 신청을 통해 확보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산물 물량을 의미하며,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적용받아 정해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순중량으로 전량 수입신고 수리되어야 함
- 순중량(NET WEIGHT) : 배정희망물량(수량), 배정물량(수량),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상 수량(물량), 할당관세적용추천서 상 물량(수량), 수입이행물량(수량), 수입미이행물량(수량), 운송 중 감모량, 수입이행실적증빙 상의 중량 등 수산물 할당관세 관련 중량은 모두 순중량임
- 수입이행 : 차수별 물량배정 통보일(계약체결일, 이하 '계약일' 이라 한다)부터 차수별 공고된 수입이행 종료일까지 배정물량 전량을 순중량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적용받아 수입이행기간 중의 날짜로 수입신고수리 하는 것
- 수입이행기간 : 수입이행을 100% 완료해야 하는 기간으로, 할당관세 추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기한(금차의 경우 2024.6.28. 까지임)

- 수입신고수리일 : 수입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리일자 (수입신고필증 상의 접수일이 아님, 금차의 경우 2024.6.28. 까지임)
- 시장공급(기한) :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물량)을 가공, 도소매, 유통업체 등에 공급(판매)하는 것(기한)(금차의 경우 2024.7.28. 까지임)으로 수입이행기한 및 추천서 유효기간과 별개이며, 추천서 발급일에 따라 시장공급 기한 내에서 추천서 별 시장공급 종료일은 상이하다.
(예 : 금차 시장공급기한은 2024.7.28.까지이나 금차 판매완료(확정)일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일 2024.6.1. 발급된 추천서를 적용하는 물량에 대한 시장공급기한은 2024.6.30.까지 최대 30일만 가능하고 2024.7.1.이후부터 2024.7.28.까지는 불가능하며, 2024.6.10. 발급된 추천서를 적용하는 물량에 대한 시장공급기한은 2024.7.10.까지 최대 30일만 가능하고 2024.7.11.이후부터 2024.7.28.까지는 불가함)
- 판매완료(예정)일 : 수입이행기한 및 추천서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업체가 작성한 시장공급 계획서 상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물량)을 시장공급기한 내에 가공, 도소매, 유통업체 등에 공급(판매)를 완료하는 예정일로 정해진 기간(금차의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예 : 금차 시장공급기한은 2024.7.28.까지이나 금차 판매완료(예정)일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일 2024.6.1. 발급된 추천서를 적용하는 물량에 대한 판매완료일(예정)일은 2024.6.30.까지 최대 30일만 가능하고 2024.7.1.이후부터 2024.7.28.까지는 불가능하며, 2024.6.10. 발급된 추천서를 적용하는 물량에 대한 판매완료일(예정)일은 2024.7.10.까지 최대 30일만 가능하고 2024.7.11.이후부터 2024.7.28.까지는 불가함)
- 판매완료(확정)일 : 수입이행기한 및 추천서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수입이행기한 및 추천서 유효기간과 별개로 업체가 작성한 시장공급계획서 상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물량)을 시장공급기한 내에 가공, 도소매, 유통업체 등에 공급(판매)를 완료한 확정일로 판매완료(예정)일을 도과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기간(금차의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예 : 금차 시장공급기한은 2024.7.28.까지이나 금차 판매완료(확정)일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일 2024.6.1. 발급된 추천서를 적용하는 물량에 대한 판매완료일(확정)일은 2024.6.30.까지 최대 30일만 가능하고 2024.7.1.이후부터 2024.7.28.까지는 불가능하며, 2024.6.10. 발급된 추천서를 적용하는 물량에 대한 판매완료일(확정)일은 2024.7.10.까지 최대 30일만 가능하고 2024.7.11.이후부터 2024.7.28.까지는 불가함)

3. 신청(추천신청서 제출)기한 : 2024.5.10.(금) 공고게시부터 ~ 2024.6.28(금) 15시까지

* 금차의 경우 업체당 신청 물량 및 횟수 제한 없음

※ 전자우편 접수이므로 접수는 신청기한내 24시간 가능함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및 배정
- 금차 최초 추천서 발급예정일 : 2024.5.13.(월)

※ 배정 물량의 미이행(수입이행기간 미준수, 시장공급기한 미준수 등)시 차기 추천 배제 등 제재 대상이 됨. 금차 신청기한 이후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른 한계물량 잔량에 대한 추가 배정 예정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천 신청할 것

4. 추천신청서 작성 시 신청단위 : kg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신청가능,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

○ 신청자별 배정물량 한도 : 업체당 배정물량 최대한도 없음

※ 배정 물량의 미이행 시 차기 추천 배제 등 제재 대상이 되고 금차 신청기한 이후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른 한계물량 잔량에 대한 추가 배정 예정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천신청할 것

5. 신청 방법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6. 의 나머지 서류 일체와 함께 전자우편 제출로 접수(3. 신청 기한 일시 내 24시간 가능)

○ 전자우편주소 : gimhaldang@gmail.com 만 사용함

- 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접수하므로, 신청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추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전자우편 접수 시 “6. 신청서류” 순서로 1개의 PDF화일이 되도록 통합하여 작성하여 제출(단,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등은 접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서류 미제출로 간주함)

-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내역은 엑셀파일로 전자우편 접수시 6.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협회는 제출 서류의 종류나 내용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고, 제출 서류가 완비(서류의 종류 및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된 경우에 한해 완비된 서류의 이메일 접수 일시를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접수 일시로 인정함

-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부요령 제4조에 따른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추천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 정상 접수 여부 확인은 제공하지 않으며 만일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 시 추천에서 제외함

6. 신청서류(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시장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선하증권(B/L, 또는 AWB) 사본 1부.

○ 송장(Invoice) 및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사본 각 1부.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신고(허가, 등록)증 사본 1부.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
 - ※ 인감증명과 사용인감이 구분된 경우 사용인감계 1부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1> 1부.
 - (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
-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 <붙임2> 1부.
 - (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excel : 추천공고문 첨부파일로 제공)
 - ※ 제출서류 중 발행(발급)일이 있는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업체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신청일 사이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로 인정함(단, 인감증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은 인정함)

7. 추천 조건

- 발급된 추천서를 사용하여 2024년 5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적법하게 수입신고 수리(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이 해당 기간 이내일 것)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2024년 6월 29일 이후에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기준)되는 물품은 적용되지 않음**
- 2024년 6월 28일 발급된 추천서도 **2024년 6월 28일까지 적법하게 수입신고 수리(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이 해당 기간 이내일 것)되어야 하며, 만일 해당 추천서의 수입신고수리일이 2024년 6월 29일 이후일 경우 해당 추천서 적용 물량은 무효로 하고 세부요령 제10조에 따른 추천배제 등 제재를 받게됨**
- 추천서의 발급일 이전 소급적용은 불가함
- 세부요령 제4조제1항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물량의 일부만 배정할 수 있음

8.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발급 및 업체 교부

- ※ 5. 에 따라 완비된 서류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부요령 제4조에 따른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추천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2근무일 이내에 추천서를 발급한다.
- 금차 최초 추천서 발급예정일 : 2024.5.13.(월)
- 금차 마지막 추천서 발급예정일 : 2024.6.28.(금) 17시
- 추천서 발급 횟수 및 시간 : 매 근무일 2회(15시 및 17시)
 - 추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업체의 추천서 수령에는 발급 시간부터 약 20여분 소요 될 수 있음
-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의 제출은 2. 의 신청기한 일시 내 24시간 제출 가능하나 추천서 발급은 최초 추천서 발급일부터 마지막 추천서 발급 일까지 매 근무일 15시(오후 3시, 매 근무일 11: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와 17시(오후 5시, 11:00 이후 15:00까지 접수분에 한함) 2회 발급함
 - (예 : 전 근무일 15:01에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근무일 11:00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함께 세부요령 제4조에 따른 적합성 등의 확인 대상이 되고, 추천에 적합할 경우 15시에 추천서를 발급함)

- 발급된 추천서의 업체 교부 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업체가 신청서 제출 시 사용한 업체 이메일 또는 추천신청서 상 기재한 팩스번호 사용)

9. 추천배제

- 추천배제 대상

「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10조」

제10조(추천배제 등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납일이 속한 적용기간 또는 도입기간의 나머지 기간 및 경과 다음날로부터 1년간 한국수산물무역협회가 추천하는 모든 품목의 할당관세 신청(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정해진 기한까지 배정받은 물량을 95.0%(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미만 수입 이행한 자 또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9조에 따른 판매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은자
2. 제4조 시장공급계획을 미준수한 자
3. 제9조 판매실적 증빙자료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
4. 기타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등 할당관세 관련 법규 및 추천 관련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자

10. 할당관세 물량 배정업체 의무 및 제재 사항

-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업체는 수입통관 수리 후 5일 이내에 (본 협회 근무일 기준) 수입 이행실적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세부요령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함
 - ※ 수입이행실적증빙 제출 등 추천서 발급 이후의 절차는 추천서 교부 시 별도 안내
-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세부요령 제9조(추천물품 판매실적보고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신속히 통관할 의무가 있으며,
- 할당관세적용 물량에 대한 시장공급기한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이고, 시장공급 후 “(별첨) 할당관세추천서 적용 마른김, 조미김 시장공급 실적 보고(양식)”을 작성하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자)계산서, 거래명세서, 출고확인서 등]와 함께 시장 공급 기한 종료일 후 협회의 5근무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세부요령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함

10. 유의사항

- 금차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업체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사용하여 2024년 6월 28일까지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필증 상 신고수리일 기준)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를 불문하고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유효기간은 추천서 최초 발급일에는 20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추천서 발급일이 다가올수록 줄어들며, 금차의 경우 마지막 추천서 발급일인 2024년 6월 28일 발급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28일(유효기간 당일)까지임

- 시장공급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시장공급기한인 2024년 7월 28일까지 사이에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 금차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업체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사용하여 2024년 6월 28일까지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필증 상 신고수리일 기준)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금차 추천에서 배정받은 물량은 금차 수입이행기간동안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적용받아 순증량으로 배정물량 전량을 해당 수입이행기간 중의 날짜로 수입신고수리 완료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수입이행실적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 미이행으로 간주되는 업체의 경우, 금차 추천의 수입이행기간 중 진행되는 차수가 다른 배정에서 금차 추천 미이행 품목(품명)과 동일한 세번부호(HS CODE)에 해당하는 품명을 배정받는다면 차수가 다른 배정의 물량 배정은 무효 처리하며 해당 무효된 추천물량에 대한 기 발급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의 적용도 취소되고, 이에 따라 세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 대상이 됨
- ※ 업체 편의를 위해 물량 배정자와 우리협회 간 계약서 날인 절차는 없으나 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서가 발급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
- 할당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할당관세적용추천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또는 증빙을 첨부하여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신청할 경우, 협회는 추천서 발행요건 충족 시 추천서 발행만 담당함을 신청업체가 인정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관세청(세관)의 해당 추천서 적용 거절에 대해 협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신청업체가 동의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12. 기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2024.5.9) 및 “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0.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 (HP:)		전화번호	회사: (HP:)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kg)	금 액 (USD)	수입국	수입신 고 예정일	보세구 역출입 반 예정	관매 완료 정 (예 일)	용 도
								일반 내수용
<p>「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p>								
첨부서류 : ① 선하증권(B/L, AWB)사본 1통							수수료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없음	
③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한국수산물협회는 김(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자(수입자 포함) 및 추천품목에 대한 관리
- 판매 및 가공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등 현황 파악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항목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판매 및 생산 실적(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실적, 재고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감사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 활용
- 제3자 제공항목 : 신청인/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서명)

(사)한국수산물협회장 귀하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및 세부요령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이행하겠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기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당사 할당관세적용 수입품목에 대해 판매실적, 자사제품 가공실적, 보관창고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관계기관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에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직인, (사용)인감

20 년 월 일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